

ORIGINAL ARTICLE

##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실무자적 관점에서 검토 -

이승원\* · 김정권 · 서정국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 A Study on the Issues and Improvement of the Exis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 Evaluation in an operator Viewpoint -

Seung-Won Lee\*, Jung-gun Kim, Jung-Kuk Seo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Dong-Eui University, Busan 47340, Korea*

#### Abstract

The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 and explored ways to improve it as a more efficient and viable institution relevant to the demand of our time and conditions in study. The first problem this study identified is found in the fact that the party to write up the assessment report is itself the business operator or the one who is planning to work out the business plan. This structure translates into placing an order with an agent for EIA report. The reporting job may be subcontracted to the agent at a cost far below the rate specified in the 'Standard for Estimate of Agency Fee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is practice also causes the vicious circle of producing a report that is written to justify the project or business in question or it leads to rough-and ready and poor documentation to minimize the time required. Second,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e plan or business, which is the target of EIA, the local residents tend to be regarded as an obstacle. This means elimination of the local people from participating in the EIA or their opinion being frequently ignored. This is the seed of distrust and hostility that sometimes provoke disagreements or fierce conflicts. The first proposal to improve these problem is to improve the factors that cause poor documentation of the assessment report as well as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EIA system.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for improvement. The agency cost for EIA should be paid by the business operator or a third party that can ensure faithful implementation of the payment.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verify transparent estimation of the agency cost. In order to enhance the professional quality of EIA agents, there should be implementation of qualification test for industrial engineer of related engineers in addition to the current EIA Qualification Test. The second proposal for improvement is to improve the citizen participation process by instituting a legal framework to make clear the purpose of the briefing session for local residents, which is held as a procedure of EIA, and to ensure more positive publicity during the stage of listening to the opinion of the local community. For a smooth and rational communication process, a moderator and a communicator of opinion, as is the case in a public hearing, could be instituted to clearly get the purpose of the briefing session across to the residents and to help to carry out the explanation and Q & A sessions according to the categories of the opinion of the residents. At present, the notification of

---

Received 9 January, 2018; Revised 14 March, 2018;

Accepted 25 April, 2018

\*Corresponding author: Seung-Won Le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Dong-Eui University, Busan 47340, Korea  
Phone: +82-51-271-2933  
E-mail: holdman80@nate.com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the public inspection of the draft of the assessment report and briefing session for the residents is made on the newspaper and internet network. But some people have difficulty with access to this method of announcement. A higher participation rate could be secured if a legal provision is added to specify putting up placards in specific places such as the entrance to the place for the briefing session for residents or the building of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 area concerned.

**Key words**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Scoping, Citizen participation, Enhance the professional quality

## 1. 서론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급속한 경제 및 국토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거 산업단지, 댐, 도로, 주택 부지 등 거점개발방식의 국토개발정책이 시행되고 이를 뒷받침하여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 전국 곳곳에 대규모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등이 조성되었다(Park, 1997; Moon, 2009; Park, 2009).

이러한 성장 위주의 정책이 1970년대 후반까지 이어지면서 수도권 및 동남권 권역에 개발이 편중되어 인구증가, 지역 불균형 발전, 환경오염 등의 각종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1977년 「환경보전법」, 「해양오염방지법」이 제정되는 등 정부 측면에서의 환경보호 정책이 시작되었다.(Oh, 2005; Sung, 2007).

여기서 도입된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제도는 정책 및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계획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과학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예측 분석·평가하고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과정의 일환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30여 년 시행되어오면서 법의 제·개정, 영향평가 방법 등의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정부정책·국민의식·지구환경 등의 변화요인에 따라 불합리성 등의 문제제기는 계속될 것이다(Lee,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바탕으로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업의 지역별 및 유형별 특성에 맞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제도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정책의 입안 및 실시과정에서 정보제공기능, 합의 형성기능, 유도기능, 규제기능 등을 가진다.

지난 30여 년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어오면서 평가항목의 추가, 주민의견수렴 방법·기회의 확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통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 규정 명시 등의 과거 문제점이 보완 되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에 따라 현 제도의 합리성 등을 파악하고 지역별·유형별 특성에 따른 적합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결과 및 고찰

### 3.1. 국내·외 환경영향평가 제도 비교

#### 3.1.1.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 절차

##### ①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2012년 7월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성격이 다른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규모가 작은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행)로 구분하였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1). 행정계획부터 사업시행까지 일관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협의절차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협의절차는 크게 4단계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Scoping), 평가서 작성, 주민 등 의견수렴, 협의내용 관리 단계로 구성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은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개발기본계획)시와 환경영향평가 시 모두 평가서를 작성하기 전 실시하게 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평가와 관련하여 Scoping을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스코핑 결과 결정된 대안 및 검토항목, 평가대상지역의 범위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일정기간 동안 수렴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서 초안을 작성한다. 평가서 초안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3-171호, 2013.12.27)」에 의거 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작성 방법을 고려하여 작성한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3).

작성된 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해당 행정지역의 정보통신망,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에 공고를 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로 공람을 실시한다. 동시에 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등에게 사업 및 환경영향평가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은 평가서 초안, 평가서, 보완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협의 내용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② 주민 등의 의견수렴 단계

주민공람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또는 사업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기간은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주민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한다.(이 경우 공휴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고문에는 개발기본계획 및 사업의 개요, 초안에 대한 공람기간 및 장소,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여부 포함)의 제출시기 및 방법을 기재한다.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대상지역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과 환경영향평가지원시스템에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게재하고 공람장소는 사업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1개소 이상 설치한다.

개발기본계획 수립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공고 시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 설명회를 개최하며 각각의 시·군·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한 곳에서 개최가 가능하다.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평가서 초안의 공공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되는 경우에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생략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시·군·구의 정보통신망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생략사유와 설명자료를 제시한다.

3.1.2. 국내·외 환경영향평가제도 비교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국과 캐나다는 타 비교국과 달리 사업뿐 아니라 주요한 입법 제안, 정책, 계획까지 포함시키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은 스크리닝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② 평가 주체

우리나라, 일본, 네덜란드는 평가 주체가 사업자인 반면 미국, 캐나다는 작성자와 관계없이 연방 정부가 그 책임이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정부가 부득이 제 3자에게 평가 작성을 의뢰할 경우 사업자와 전혀 관계 없는 자에게 의뢰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주체는 연방정부로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주관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선정한 용역업체에 의해 작성된다. 용역업체는 그 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이해관계나 재정적 관계가 없음을 문서로 공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작성하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③ 주민의 참여

주민참여의 기회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과거 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한번 있었으나 2012년 환경영향평가법 전면개정에 따라 스코핑 단계에 의견개진의 기회가 추가되었다. 미국은 초기단계에서부터 최종단계

Table 1. Assessment scope of EIA by countries

	Assessment scope
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tting target areas and Assessment items by scoping</li> <li>- Natural and living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air, water, waste and noise</li> <li>- Changes in population,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including historical culture values</li> <li>- Assessment items can be decided for each individual case based on scoping</li> </ul>
Jap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fined items</li> <li>- Maintaining a good state of the natural components of the environment(atmospheric environment, water environment, soil environment and other environment)</li> <li>- Securing water diversity and systematic con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plant, animals, ecosystems)</li> <li>- Abundant contact between people and nature(landscape, place of contact activity)</li> <li>- Environmental load(waste, Greenhouse gas)</li> </ul>
Cana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tting target areas and Assessment items by scoping</li> <li>- Some projects have established guideline for Assessment items</li> </ul>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following elements are prescribed as environmental elements subject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ocument</li> <li>- Humans and animals and plants</li> <li>- soil, water, air, Climate, Landscape</li> <li>- Tangible assets and cultural heritage</li> </ul>
Netherla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tting target areas and Assessment items by scoping</li> <li>- The competent government office presents guidelines for scoping that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sessment committee hears opinions of consultation</li> <li>- The licensee owner presents scoping guideline under consultation with the business operator</li> <li>- Based on the scoping guideline, the scope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ay determine the Assessment items, alternatives and alternative comparison methods</li> </ul>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fined items</li> <li>- Under the amendment of the 2012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 we undergo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ver 60,000 m<sup>2</sup>)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uncil (scoping) for projects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li> </ul>

까지 기회가 여러 차례 있으며, 캐나다와 네덜란드의 경우 스크리닝, 스코핑 및 심사단계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기회가 주어지고 일본 역시 환경영향평가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미국 제도와 유사하게 여러 차례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주민의견 수렴 방법에 있어서는 미국, 일본, 모두 소관관청 주관 하에 환경영향평가를 공람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가 함께 한자리에서 설명회, 공청회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수렴되며, 이때 사업자 주도하에 설명회와 공청회가 이루어진다.

#### ④ 평가서 심사

평가서의 심사는 인허가관청이 주관이 되어 진행시키고 있는 것은 공통적인데 우리나라와 미국은 환경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일본은 필요에 따라 협의하도록 하고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전문가와 해당관청의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회의 검토와 조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 3.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 3.2.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① 평가서 작성 주체에 관한 문제

평가서의 작성 주체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자(전략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업시행자(환경영향평가, 소규모

**Table 2.** Business target of EIA by countries

Target business	
U.S	- Federal government acts such as recommendations, legislation proposals, policies, plans, etc. that seriously affect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 - A system to whic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applied to all business (excluding list, FONSI, detailed evaluation)
Japan	- Business that requires national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 Business where national subsidies are supported - Business conducted by an incorporated administrative agency
Canada	- Federal government is the proponent of the project - In cases where the federal government invests in the proposer or guarantees funds to implement the project - Federal government provides a license to perform a business
EU	- Crude oil refining industry, thermal power plants and nuclear power plants, reprocessing facilities for radioactive nuclear fuels, comprehensive factories for dissolving iron and steel, equipment for extraction, processing, deformation and production of asbestos, integrated chemical plants, Highway, long distance railroad - Agriculture · Forestry · Forms include mining business, energy industry, metal processing, glass processing, chemical industry, food industry, textiles · leather · wood · paper industry, rubber industry, infrastructure industry, tourism industry · leisure industry
Nether lands	- Based on EU Directive
Korea	- Urban development, industrial location, energy development, port construction, road construction, water resource development, railway (urban railroad), airport construction, river development, landfill / liquidation, tourism complex, development of production areas, development of specific areas, sports facilities,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military facilities, collection of stones

모환경영향평가)로써 주체자는 시간적, 비용적, 전문적 등의 사유로 대부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한다.

계획을 수립하려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발주하여 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행비용이 저렴한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찾아 계약하거나 견적을 통하여 지정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저렴한 가격을 강요하여 계약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발주기관으로부터 평가서 작성용역에 대하여 도급을 받거나 도급받은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2012년 10월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운영방침의 제정·시행에 따라 2013년 1월 1일 이후 계약된 환경영향평가서(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포함)의 경우 원도급률,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료를 평가서에 첨부하도록 하였다.

원도급은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산정된 금액 대비(전략환경영향평가는 설계금액 대비) 65% 미만, 하도급은 분야별로 원도급 금액의 80% 미만인 경우 저가 원도급 및 저가 하도급으로 구분되어 평가서 등의 거짓·부실 작성 여부에 대하여 중점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서상 원도급, 하도급 내역은 평가서 상에 단순 보여주기 식으로 제시하고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대행비용을 달리함으로써 그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평가서 작성에 관한 문제

평가서 작성 주체가 직접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업무를 발주함에 따라 평가서가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합리화 문서가 되고 계획결정 또는 사업승인의

**Table 3.** The results of recognition survey on the assessment agency and licensee

Large classification	Medium classification	Minor classification
Role of agent	The existence of a defective assessment document	- Transfer the responsibility of the business operator to the agent - The business operator declined plan changes due to the process of consultation
Limit of substitution system	Subordinate relationship	- The agent is dependent on the business operator - The agent is the weak to review agency(civil servant), business operator, consultation system - Difficulty of substitutional actors in coordinating change of business plan in inhabitant's opinion convergence
Business of perception lack	Business responsibility avoidance	- Lack of awareness of the environment - The main purpose of the agent is to let the consultation pass
Unreasonable contractual relationship	Strengthen the status of assessment agents	- There are many cases where business operators are not implementing design changes that cause additional charges -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 that can assessment the ability of the agent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서의 작성기간 단축을 강요(법적으로 협의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협의기관에 기간의 단축을 요구하기는 어려움)하게 된다. 따라서 평가서 작성에 있어서 자료의 수집 및 검토, 영향예측의 분석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작성되지 못하고 무리하게 단축시켜 줄속적으로 작성되는 문제점을 가져온다.

또한 자연생태환경, 환경질(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 토양오염도 등)등 평가대상지역의 현황조사, 평가서 작성은 계획의 결정 및 사업승인을 위해 사업자에게 유리한 의도대로 진행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 신뢰가 결여된 부실한 평가가 되기 쉽다. 심지어 사업에 불리한 결과 및 자료를 은폐하거나 조작하여 평가하고 협의를 거치게 된다.

이는 부실작성 등에 대한 사항을 적발하기 전에 사업이 시행될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환경 등이 소멸, 훼손되거나 원상복구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 등이 소요될 수 있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영향평가의 현실적인 어려움 중의 하나는 평가기준을 객관화하고 수치화 하기 어려운 분야가 많다는 점이며 이는 생활환경보다는 자연환경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타 평가서나 논문 등의 내용을 복제하거나 표절하여 작성하고, 환경저감 대책은 해당 계획 또는 사업특성에 적합하도록 다각적이

고 심층적 분석 등을 통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이고 나열적으로 제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 3.2.2. 주민 등의 의견수렴

#### ① 주민설명회의 목적 불명확

1990년 환경영향평가에서 도입된 이후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이르기 까지 제도의 시행으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그동안 수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는 계획수립에 대한 주민의 동의 여부보다 협의기관의 인·허가를 받는 것이 사업주체자 입장에서 중요한 목적이 되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은 영향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 중의 하나라고 인식하여 형식적으로 진행되기 마련이다. Table 4에서는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본래의 목적 및 취지에서 벗어난 주민의 요구사항 등이 다양하게 표출되어 주민설명회가 무산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 ② 개최에 대한 소극적 홍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는 현재 일간신문과 지역신

**Table 4.** The results of recognition survey on the citizen participation

Large classification	Medium classification	Minor classification
Low participation efficiency of citizen	Ignore the opinions of citizen	- Even if citizen's present opinions, they are not reflected correctly - The business operator does not carefully consider the opinion of the citizen's
	Citizens want only reward	- Citizen's opinion has many arguments for receiving a lot of reward - Citizen's environmental consciousness level is low
	There is no verification as to whether to reflect the opinions of citizen	- We need a spokesperson for citizen's within the system - The approval agency must take initiative to gather the opinion of citizen's
	The others	- Citizen participation period and method - Realization of expenses such as the holding cost of citizen briefing - Improvement methods of popular opinion gather is necessary(reward) - Systematic learning efforts of citizens - Businesses default on promises with citizens

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대상지역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며 2012년 7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 시스템에도 추가로 게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구독자의 감소와 노년층의 정보통신망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실질적으로 관련 주민들의 참석이 어려워 무관한 주민, 계획 수립자 또는 사업자, 용역업체,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설명회가 진행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관계 주민들로 하여금 시행자와 사업에 대한 불신, 적대감을 가져올 수 있다.

### 3.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 3.3.1. 평가서 부실작성 요인·인식의 개선

##### ① 환경영향평가대행 비용의 예치

환경영향평가 제도상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사업자에게 종속될 개연성이 높아 사업승인의 소요기간의 단축(환경영향평가의 협의완료기간 단축)요구, 영향예측에 따른 저감방안의 소극적·최소한으로의 수립 등 대행자의 독립성 결여로 이어진다.

따라서 종속관계로 대행 비용 지불의 불확실성으로 객관적, 독립성이 결여되는 점을 방지 보완하기 위

하여 그 비용을 승인기관이나 환경영향평가협회 등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있는 제3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의 법적인 제도 마련으로 평가대행자는 평가서의 작성에 있어서 사업자의 지시나 간섭 등으로부터 벗어나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

##### ② 환경영향평가대행 비용의 현실화

2012년 7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과 함께 평가서 작성비용의 현실화를 위하여 평가서 작성계약을 당초 통합발주에서 분리발주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산정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와 환경영향평가의 산정기준에 있어서 평가서 협의절차, 평가서 구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의 소요인력, 비용 등이 환경영향평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현실화 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 ③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전문성 제고

현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위해 기술자격은 환경영향평가사부터 환경분야·조경분야·도시교통분야·에너지기상분야·화공분야 기사 자격 이상 소지 자로서 총 1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특히 환경분야의

자격증이라 함은 대기환경, 생물분류(동물, 식물), 소음진동, 수질환경, 온실가스관리,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폐기물처리가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서 사업의 특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점평가 요인을 설정, 체크리스트법, 상호작용 매트릭스법, 네트워크법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현지조사·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정리, 과거의 자료를 근거로 앞으로 예상되는 오염치를 추정하여 환경기준과 비교·평가하고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하여 저감시설의 설치 등의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제도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시험 제도 실시를 제안한다.

#### ④ 평가서 작성 시 주민 참여 확대

평가서에는 자연생태환경, 환경질 등 평가대상지역의 현황조사 자료를 기재하고 있으나 평가서 초안의 공람이나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되면 조사결과에 대하여 불신하게 된다. 이는 사업시행자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로부터 발주된 업체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계획 또는 사업에 대부분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주민 대표, 환경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탐문조사를 통해 지역적 특성, 생태적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 조사결과 및 평가서에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3.3.2. 주민참여제도의 개선

#### ① 주민설명회의 취지 명확화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주민설명회가 주민과 사업자(평가대행사), 승인기관 관계자가 유일하게 함께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보상·이주, 공사 및 운영 시 주거환경 피해, 주민의 혜택 및 복지 등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게 되어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게 될 환경영향에 대해 적절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본질적인 주

민설명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여러 차례 설명회를 가지는 것은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설명회의 취지를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사업계획,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계획 등 주민의견의 특성에 따라 구분지어 설명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다.

#### ② 주민 의견수렴 시 적극적인 홍보

평가서 초안의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한 사항을 과거 2개 이상의 신문에 1회 이상 공고를 하는 것에서 현재 정보통신망을 통한 평가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율을 한층 더 높이도록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의 경우 특정신문이라는 매체와 온라인상으로 접근하여만 확인할 수 있어 아직까지 온라인을 통한 매체의 접근이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홍보라고 보기에 어렵다. 따라서 신문 공고, 정보통신망 게시 외에 주민들이 별도의 노력 없이 계획 또는 사업의 진행현황을 알 수 있도록 최소한 주민설명회 개최장소의 입구, 대상지역의 행정기관(도시지역의 주민센터, 비도시지역의 면사무소 등)에 공람공고 시기와 맞추거나 주민설명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이전에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한다면 적극적인 홍보가 되고 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4. 결론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및 국토개발이라는 성장 위주의 정책에 따라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환경보호 정책이 이를 뒷받침하여 오지 못하다가 1977년에 들어서면서 「환경보전법」, 「해양오염방지법」이 제정되고 30 여년이 흘러오는 동안 법의 제·개정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의 기법, 제도, 평가항목 등도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하지만 정부정책, 국민의식, 자연환경 등 요인의 변화에 따른 불합리성 등의 문제제기는 계속 될 것이므로 평가서의 객관성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



가 절차를 이행하면서 계획 수립자 또는 사업자, 승인 기관 및 협의기관, 주민 간 공정성, 투명성을 기여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및 취지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평가서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작성주체의 독립성 보장으로 신뢰성을 가지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이 현실적이고 공탁을 통한 지급형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사업자로부터의 종속관계를 벗어나 평가서의 졸속 작성, 사업시행을 위한 합리화 문서가 되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제도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시험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주체는 바로 주민들이므로 이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평가서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 시 지역주민 대표, 민간환경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토록 하고,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 토론을 위한 유일한 장이 될 수 있는 설명회가 개최될 경우 현행되고 있는 신문 공고, 정보통신망 게시와 함께 홍보효과 및 참여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체(현수막 등)의 활용이 요구된다.

이상의 개선방안들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국소적이고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법적 제도, 방법 등으로 실현될 수 있는 기초 연구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및 발전은 사업자, 정부기관, 주민 등 모든 관련주체들의

진실되고 성실한 태도로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실천이 필수적 일 것이다.

## REFERENCES

- Lee, Y. G., 2008, A Stud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and deliberation period reduction, Master Thesis, Chonnam University, Chonnam, Korea.
- Ministry of Environment, 2011,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 Ministry of Environment, 2013, Regulations on the Prepar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Moon, B. Y., 2009, A Study on improvement strategy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Seoul Metropolitan City, Master Thesis, Kwang Woon University, Kwang, Korea.
- Oh, T. G., 2005, A Review on the EIA system of each country and its implication,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5, No.4, pp 62-70.
- Park, S. C., 1997,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 : Focused on the EIA of the Youngheung island power plant, Master Thesis, Catholic University, Gyeonggi, Korea.
- Park, J. H., 2009, A Study on resident's participation of environmental policy : Centering on environmental impact evaluation system, Master Thesis, Yeungnam University, Yeungnam, Korea.
- Sung, Y. J., 2007, A Study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s : Focus on the northeast Asia, Master Thesis, Busan University, Busan, Korea.